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1800187

신 청 인: 이엔에스코리아

피신청인: 진풍 (관리자 : 박명환)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주)이엔에스코리아 대표이사 박준환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창우동, 하남벤처센터 5

층)

피신청인: 진풍 (관리자:박명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58

분쟁 도메인이름은 “newdays.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OnlineNIC,Inc.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8. 4. 9.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8. 4. 9.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8. 4. 20.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8. 4. 23.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8. 5. 7.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8. 4. 27.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18. 5. 3.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장문철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18. 5. 3.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8. 5. 4.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그 후 행정패널 절차명령에 따라 2018. 5. 9.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8. 5. 15.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18. 5. 10. 제출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회사 "(주)이엔에스코리아"는 2004. 12. 1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세제, 광택제 제조 및 판매를 해온 기업이며 최근에는 유기농 및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술력을 기초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국제적 규모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NEWDAYS"에 대한 표지에 대해 2013. 8. 29 상표등록 출원한 후 2014. 1. 10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인터넷종합쇼핑몰 운영을 위한 서비스표도 등록하였다. 그후 미국과 중국에서도 해당표지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도메인이름 <newdays.kr>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newdays.com>을 2001. 12. 26 등록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쪽 짜리 파킹 웹 페이지를 게시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newdays.com>은 신청인의 등록상표 'NEWDAYS'와 동일하므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NEWDAYS'라는 표지에 대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해당표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newdays.com> 을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미화15,900달러에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newdays.com>은 'NEW'와 'DAYS'를 결합한 도메인이름이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당시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은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구상하며 해당도메인이름을 2001. 12. 26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업 부진으로 새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지 10 여년이 지난후 신청인은 'NEWDAYS' 표지에 대해 2013. 8. 29 상표등록 출원한 후 2014. 1. 10 상표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신청인의 존재와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이었고 그후 접촉한 사실도 없다.

(3)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이름의 거래는 일반적이며, <sedo.com> , <godaddy.com> 등 도메인이름 거래 사이트

들도 많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첫째, 분쟁도메인이름 <newdays.com>의 요부는 'NEWDAYS'이며 이는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다.

규정 제4조(a)(i)에서 정한 요건에서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 이름이 동일한지 여부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여부는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의 비교로 판단된다.(참조 : *Dixons Group Plc v. Mr. Abu Abdullaah*, WIPO Case No. D2001-0843; *AT&T Corp. v. Amjad Kausar*, WIPO Case No. D2003-0327)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의 구성 중 ".com"과 같은 식별력이 없는 gTLD는 동일성 및 유사성 여부 판단에서 무시할 수 있다.(참조: *DHL Operations B.V. v. zhangyl*, [WIPO Case No. D2007-1653](#)).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a)(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 제4조(a)(ii)에서 정한 요건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해당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일단의 증거(prima facie)를 입증한 후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NEWDAYS'의 상표권자인 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상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신청인은 일단 입증책임은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prima facie case)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자신이 해당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전환되었다고 본다. (WIPO Overview 3.0, S. 2.1)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newdays.com>의 'NEWDAYS'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은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구상하며 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등록후 17년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선의의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분쟁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의 이름이나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거나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a)(i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 제4조(a)(iii)에 따르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고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제4조(b)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취지에 해당하는 기타 사정도 포함된다.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하고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

려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우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 <newdays.com>을 2001. 12. 26  
등록한지 10 여년이 지난후 신청인이 'NEWDAYS' 표지에 대해  
2013. 8. 29 상표등록 출원 후 2014. 1. 10 해당상표를 등록하였으  
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에 신청인의 상표인  
'NEWDAYS'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었다고 본다. 또한 신청인이 상  
표등록 하기전 부터 신청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NEWDAYS' 표지  
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 등록 당시에 누군가가 'NEWDAYS'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는 사실도 알수 없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에서  
처럼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신청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UDRP 행정절  
차 패널은 피신청인측에 부정한 목적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WIPO Overview 3.0, 3.8.1) 그 예외적인 상황으로 (i) 기  
업간 합병계획이 발표되기 직전 또는 직후 (ii) 피신청인이 전에 근  
무한 적이 있어 기업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우 (iii) 신상품 출  
시나 중요행사가 이미 미디어등을 통해 관심을 받은 경우 (iv) 신청

인이 해당 상표의 상표등록 출원을 한 후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WIPO Overview 3.0, 3.8.2)

따라서 본 조정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했을 당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newdays.com> 을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미화 15,900달러에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적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이름의 거래는 일반적이며, <sedo.com> , <godaddy.com> 등 도메인이름 거래 사이트들도 많다고 주장한다. 이점에 있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사용하지 않은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이 상표 등록하기 훨씬 전에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것이며, 오히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10여년이 지난 후에 신청인이 해당표지를 상표등록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의 파킹 웹페이지에는 신청인의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신청인의 경쟁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찾을수 없으며, 웹페이지상에 게재된 도메인이름의 판매금액표시도 신청인을 특정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의 가격제시를 하였다기 보다는 공개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해당 가격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패널은 규정 제4조(a)(ii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한 분쟁도메인이름인 < newdays.com>의 이전청구를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

1인 행정패널

장문철

결정일: 2018년 5월 29일